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 ~ 9



제1567호 2009. 9. 7.

공 고

제2009-701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2
제2009-70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4
제2009-703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5
제2009-705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6
제2009-706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8
제2009-707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0
제2009-708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1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9-35호			12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계획 공고		

인사발령

행정직 6급 공무원 기동근무		13
행정직 8급 공무원 의원면직		13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휴직(육아)		13
행정직 9급 공무원 의원면직		13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신규임용		14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자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701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함.
(안 제16조, 장제목 제4장, 제5장 등)
 - 가)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 나) 잡종재산 ⇒ 일반재산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담부서 추가(안 제10조제2항)
 - 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 및 특별회계 전담부서
- 3) 조항 신설(안 제29조제3항)
 -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함.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함. (안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 가) 감액율 : 100분의 50 ⇒ 100분의 70

- 5) 조항 삭제 (안 제26조, 제35조제4항 및 제6항, 제41조)
- 6)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확대(안 제90조)
 - 가) 제1항 보상금 상한액 1,000만원 ⇒ 3,000만원 상향
 - 나) 제1항제1호 필지별 한도액 200만원 ⇒ 600만원 상향
 - 다) 제1항제2호 그 밖의 재산 한도액 100만원 ⇒ 300만원 상향
- 7)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 비치함(☎490-3340)

2009년 9월 7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상위조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 번호를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안 제3조)
- 2)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관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관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관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안 제17조)
- 3) 여행주차장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안 제23조)
- 4)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관을 발행할 수 있다.(안 [별표 1]제6호)
- 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써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안 [별표 1]제15호)
- 6) [별표 2]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추가
- 7) 조례 조문번호 - 일련번호로 변경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에 비치함(☎490-3488)

2009년 9월 7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가) 「식품위생법」 중 제71조➡제89조, 제21조제2항➡제36조제2항, 제32조제1항➡제47조제1항, 제65조➡제82조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제7조➡제21조, 제42조➡제61조
- 2) 기금 재원 조성 확대(안 제3조)
 - 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3) 기금 사업 추가(안 제4조)
 -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운영
 -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용자사업
 - 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보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에 비치함(☎490-3360)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인 협의·조정을 심의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며, 수당 지급기준을 다른 조례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가)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개정
- 2)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조정을 심의로 변경
가) 제3조(기능) 중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를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
- 3)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가) 제13조(수당)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로 개정
- 4)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Ⅱ.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비치함(☎490-3367)

2009년 9월 7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분쟁조정 범위

- 가)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나)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다)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2) 위원회 구성 등(안 제3조)

- 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중랑구청장이 위촉한다.

3) 조정의 신청(안 제11조)

- 가)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조정절차(안 제13조)

- 가)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5) 조정의 거부 및 중지(안 제14조)

가) 분쟁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나)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조정 등을 받은 사항

6) 조정에 대한 불복(안 제17조)

가)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비치함(☎490-3367)

2009년 9월 7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 인정시장의 기준 등(안 제7조)
 - 가) 도·소매업, 용역업의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 2)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안 제3장)
 - 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는 지역을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안 제20조, 제22조)
 - 가) 상인의 동의를 얻어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4) 예산의 지원(안 제24조)
 - 가) 상인회에서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25조)
 - 가)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의 사업 목적 외 사용,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교부중지 및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함.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비치함(☎490-3367)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포괄적인 치료·관리체계 구축,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센터의 명칭 및 위치
- 2) 센터의 수행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 노인정신건강증진과 기타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 나)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 다) 치매조기검진, 환자의 발견등록관리 업무
 - 라) 보건복지인력 치매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 3)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 운영(안 제4조)
- 4) 구청장은 운영규정(조직, 인사, 재산·물품관리,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이를 수탁자에게 시달(안 제5조)
- 5) 수탁자는 시달 기준에 부합하여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보고(안 제6조)
- 6) 센터를 위탁·협약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경비 지원(안 제8조)
- 7) 협약 운영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보고(안 제11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지도과에 비치함(☎490-3747)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 기술직(전산) 6급 1명

2. 응시자격

- ☐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직종·직급별 자격 기준

구 분		채 용 하 한 연 령	자 격 기 준
직종	직급		
기술직 (전산)	6급	공고일 현재 만20세이상	◆ 공기업 또는 상장기업체의 해당분야 직급에서 3년이상 이거나 직하 직급에서 5년이상 경력자 ◆ 전산관련 분야 2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하고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방 법 : 교부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방문 교부(방문접수)
- ☐ 기 간 : 2009. 9. 9(수) ~ 9. 11(금), 18:00한
- ☐ 장 소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3422-4832~4)

5. 응시자 제출서류

- ☐ 응시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1부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2매이내 작성) 각 1부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4.5점 또는 4.3점 만점 환산성적) 각 1통
- ☐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및 단체 발행, 직위/직급 및 직무내용 기재) 1통
- ☐ 자격증 사본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 ☐ 응시수수료 : 5,000원

6. 서류전형 결과, 실기 및 면접일정·결과 :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7.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우리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3422-4832~4)로 문의하거나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jungnangim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행정직 6급 공무원 기동근무

2009. 9. 3.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1	이유경	보건소 보건행정과 기동근무를 명함 (2009.09.03.~별도명령시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지방행정 주사

행정직 8급 공무원 의원면직

2009. 9. 5.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이은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서기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휴직(육아)

2009. 9. 6.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홍승희	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09.09.06.~2010.09.05.)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지방사회복지 서기

행정직 9급 공무원 의원면직

2009. 9. 7.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장연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화제1동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신규임용

2009. 9. 7.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장혜경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목제1동 근무를 명함	목제1동	9급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
2	전계현	지방약무주사보시보에 임함 보건소 근무를 명함	(신규)	